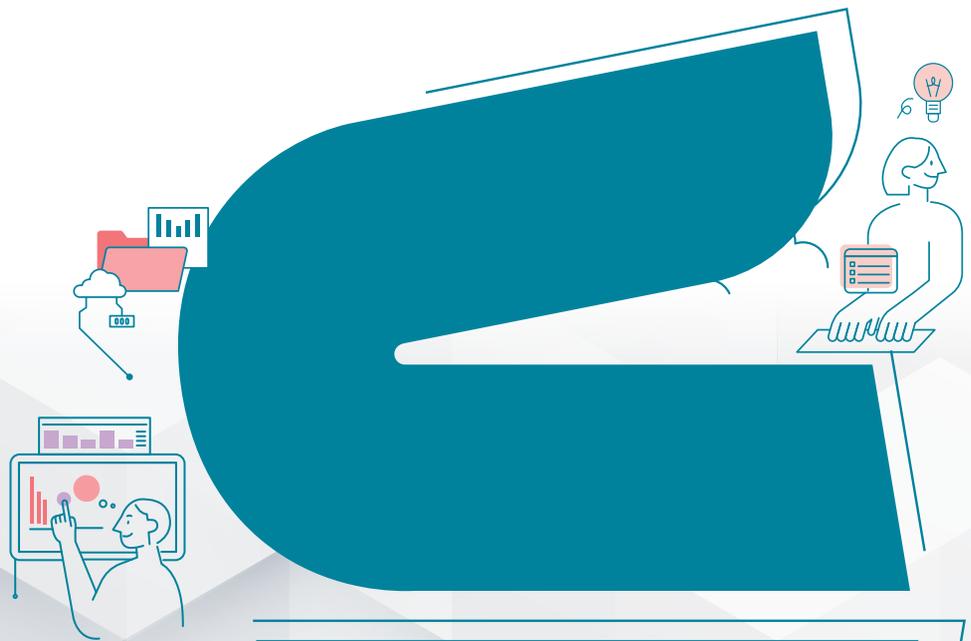


2024

#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SOCIAL  
VALUE  
INDEX

사회적가치지표

##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 1.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사업 활동 (35)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근로자 지향성 (13)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 작성 기준시점: 2023년도 기업의 활동 및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증빙必)

\* 지표14번(혁신노력도)만 최근 2개년(2022년,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 지표별 작성방법

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배점 : 2점

### 지표정의

- 기업이 명시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지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 가치(목적)를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일은 기업미션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직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협력기관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미션을 이해시키고 보다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사회적 목적은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및 목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신청서 양식

사회적 목적	
--------	--

- ① 사회적 목적 :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

### 작성사례

사회적 목적	<p><i>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i></p>
--------	--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의 대외 공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2

##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배점 : 5점

## 지표정의

-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듯 사회적 가치(성과)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조직이 설정한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참여를 촉진시킵니다.

## 작성방법

-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는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내용으로 기준(목표), 담당인력(담당자), 성과보고서(활동내용), 평가위원회(평가), 사내공유(확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단요소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요약)
측정 기준	유 / 무	
담당 인력	유 / 무	
성과보고서	유 / 무	
평가위원회	유 / 무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 무	

## ※ 판단요소별 기준 및 내용

측정기준	사회적 성과목표 및 등급기준 설정유무	기업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기준을 설정하여 기재
담당인력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 유무	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인력이 있고, 업무분장표 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대표자 제외)
성과 보고서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내용	측정기준(목표)에 따른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내역 및 해당 목표지표의 등급결과를 기재
평가 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평가위원 위촉내역과 평가의견 기재
평가결과 사내공유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무	인트라넷, 메일공지 등을 활용한 임직원 대상의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공유내역 기재

○ 판단요소별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기준:**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업종 또는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표 및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담당인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측정·보고하는 담당 인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성과보고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측정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한 내역과 달성한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평가위원회:** 기업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는 조직의 구성 유·무로 판단하며 평가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으나, 내부인사(이사 및 직원 등) 외에 외부인사도 포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 **평가결과 사내공유:** 기업 사회적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거친 평가결과를 내부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성사례

판단요소	구축여부	근거
측정기준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목표 및 등급설정
담당인력	유	업무분장표(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자 및 해당업무 명시)
성과보고서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활동내용 및 등급결과 기재함
평가위원회	유	평가위원 위촉(내부3인 외부1인) 및 평가의견·서명 확인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인트라넷(메일)을 통한 전체 임직원 대상의 평가결과 공유

※ 참고서식: [제3장] 3번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및 4번 위촉장 참조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2023년도 사업계획서(또는 사업 결과보고서) 및 업무분장표

\* 기업 자체양식 활용이 가능하나, 1)사회적성과 목표, 2)등급 기준, 3)추진활동·내용, 4)등급결과, 5)담당자(업무분장표) 등 필수포함(상기 확인불가 시 해당항목 불인정)

- 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제3장] 양식 참조)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판단요소	증빙자료 인정 범위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대상연도(2023년)의 사업계획서·결과보고 내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기준 기재 유무</li> <li>• 사회적 성과 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등급 기재</li> <li>•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성과 관리 관련자료 및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등</li> </ul>
담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에 '사회적 성과 관리 담당' 명시 유무</li> <li>• 사회적 성과 보고서 상 담당자 기재</li> </ul>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대상 연도(2023년) 사업 결과보고 내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유무</li> <li>• 사회적 성과 관리보고서에 따른 '사회적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li> <li>• 기업 자체 사회적 성과 관리보고서,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자료 등(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사회성과인센티브 등)</li> </ul>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li> <li>• 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 항목에 따른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서명의 기재 유무 (연 1회 이상의 평가실시 내역 확인)</li> <li>• 외부전문 사회적 성과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을 시, 평가위원회를 갖추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li> <li>•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직운영의사결정기구에서 사회적성과에 대한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회의록, 결과보고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가능할 시 이를 인정</li> </ul>
평가결과 사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한 내·외부인사의 평가까지 수행한 사회적 성과평가결과 등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로의 공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정</li> <li>* 홈페이지 게재, 인터넷 공유, 사내 게시판 부착 등</li> </ul>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배점 : 15점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착안사항의 ①번 / ②번은 필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항목만 기재합니다.

판단기준	착안사항
<p>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5점)</p>	<p>※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p> <p>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 항목만 작성</p> <p>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은 ②번 항목만 작성</p> <p>① <b>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b>: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의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                      - (고용) '23.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 (임금) '23.12월 임금대상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p> <p>② <b>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b>: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 노력 등 기재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등 기재</p> <p>③ <b>근로자 보건 및 안전</b>: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차원에서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 진료 지원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등 실시내역</p> <p>④ <b>고용의 질</b>: 근로자 친화적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조성 노력 확인                      - 증빙자료: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시행 등</p>
<p>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p>	<p>①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 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p> <p>②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 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p>



판단기준	착안사항														
(10점)	③ (기타 사회적가치) 상기 항목 외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자유롭게 기재하고, 그 수준을 서술														
	 <b>기업 작성예시</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제품·서비스</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생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판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r> <td>이용자</td> <td>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td> </tr> <tr> <td>기타</td> <td>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예시)	제품·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생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판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r> <td>이용자</td> <td>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td> </tr> <tr> <td>기타</td> <td>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예시)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구분	내용(예시)													
	제품·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생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판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r> <td>이용자</td> <td>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td> </tr> <tr> <td>기타</td> <td>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예시)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구분	내용(예시)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 작성사례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p><b>1.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b></p> <p>① <b>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b>(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고용비율(2023년 12월말 기준) (예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li> <li>- 취약계층 평균시급(2023년 12월 기준)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li> </ul> <p>② <b>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b>(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b>작성 예시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토록 규정함</li> <li>- 2023년 12월 전문가(자격이수 등)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운영</li> </ul> </div>

구 분	내용
	<p><b>작성 예시 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의 사회적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로, 뮤지컬 공연의 50%이상은 반드시 창작작품을 공연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환원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2023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환경 분야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li> </ul> <p><b>작성 예시 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li> <li>-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연습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p>※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노력을 형식·내용·분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재 가능</p> <p><b>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b></p> <p>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li> <li>-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유상 건강검진 진료 지원</li> <li>- 근로자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업무고충 및 심리안정 서비스 지원</li> </ul> <p>④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li> <li>-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li> <li>-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li> <li>-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li> </ul>
<p>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p>	<p><b>작성 예시 4.</b></p> <p>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가치</p> <p>가. 생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유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구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li> <li>-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li> <li>-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li> <li>- 생산부예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li> </ul> <p>나. 판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li> <li>-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li> <li>-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li> </ul> <p>다. 이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적 가치 발생</li> </ul> <p>라.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li> </ul> <p>※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p>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3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지표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협의회 간 상호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② 협의회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합니다.  
ex)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 업종네트워크 등
-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 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양해각서(MOU) 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 내역,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연 1회
☆☆업종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관련 양해각서(MOU) 문건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등
  - 협의회 회원사 명단, 협의회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지표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①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②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④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양해각서(MOU) 체결문서(협약서), 계약서,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지역사회의 기관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관 외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와의 협력활동은 '지표 4'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00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00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00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 <b>복리후생비</b> :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② <b>구성원 성과급</b> :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3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③ <b>교육훈련비</b>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3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 <b>시설투자비</b> :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23년도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 <b>지역사회 재투자</b> :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3년 내) ② <b>사회서비스 제공</b> :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3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3년 내)



## 작성사례

구 분	내 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p>① 복리후생비 -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지급, 통근차량 제공</p> <p>② 구성원 성과급: 23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p> <p>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p> <p>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p>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p>(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p> <p>(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 제공(환산금액: 80만원)</p>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p>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00회,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임직원 봉사활동) 00회</p>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내부활용: 근로자 복리후생비 지원내역, 2023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관련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배점 : 5점

지표정의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 인사·사외이사 등이 참여하여 내는 의견이 높을수록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지표는 해당인원의 참여율과 의사결정기구 운영 결과를 임직원 대상으로 공유한 실적을 측정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별 회의일자 및 참석인원 수, 회의 결과 공유 여부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의사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합계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회의결과 공유 비율						

※ 참가비율 산식:  $\{(\text{근로자 측 인사} + \text{사외이사} + \text{조합원}) / \text{총 참가인원}\} \times 100\%$   
 회의결과 공유비율 산식:  $(\text{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횟수} / \text{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times 100 (\%)$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하여 최종비율 산출

- 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를 의결하는 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합니다.(주주총회 및 직원총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참가비율은 개별회의의 비율평균이 아닌 각 항목의 모든 참가인원 수를 합한 후 합계에 대한 참가 비율로 산출합니다.
- ③ 각 항목의 구체적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기구: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이사회 등)
  - 회의 참여인원: 해당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외이사: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근로자인사: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조합원: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재합니다.

\* 사내이사, 감사는 조사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겸직의 경우 인정 가능)



- ④ 사외이사, 근로자대표(이사), 조합원은 등기부등본 상 등재여부 또는 선출동의서, 위원명부, 조합원 명단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

### 작성사례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이사회 or 운영위원회 1개만 기재	3.13	O	5	1	1	-
	4.17	O	6	1	1	-
	7.17	X	5	1	1	-
	10.23	X	6	1	1	-
합계		2	22	4	4	-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frac{36.4\%}{\{(4 + 4) \div 22\} \times 100(\%) = 36.3636... \rightarrow 36.4\%}$					
회의결과 공유 비율	$\frac{50\%}{(2 / 4) \times 100(\%) = 50\%}$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23년 회의록 및 참여자명부
  -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관련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 임직원 교육 사진 등 관련 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

배점 : 8점

지표정의

-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대표 지표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작성합니다.



기업 작성예시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원/시간	

※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단위: 원) 산식

= 근로자 12월 총 급여(임금대장 상 지급내역 확인) ÷ 12월 총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역 확인)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산식

= 전체 근로자 수 x 근로자별 일 근무시간 x '23년 12월달 근무일 수

\* 참고: 2023년 12월의 근로일 수는 총 20일(주말, 공휴일, 주휴일 제외) 따라서 주5일 평일 근무자의 12월 근무일수는 20일로 계산

(근무시간 계산 예시)

- ① 전체 근로자 수 총 5명(일 8시간 4명/ 일 7시간 1명, 모두 주5일 근무)일 경우,  
→ (8시간\*4명\*20일) + (7시간\*1명\*20일) = 780시간
- ② 전체 근로자 수 총 6명(일 8시간 4명 주 5일 근무, 일 6시간 2명 주 5일 근무, 일 4시간 2명이 주3회 근무)일 경우  
→ (8시간\*4명\*20일) + (6시간\*2명\*20일) + (4시간\*2명\*12일)= 976시간

- ①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 2023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총 급여 (단위 : 원)
- ②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 2023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 ③ 기업 업종분류는 [부록] 내 '참고자료1' 참고(매출액의 40%이상을 주 업종으로 측정)
- ④ 업종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평균 수준은 [부록] 내 '참고자료 4'를 참고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월급 기준: 2,010,580원)

- ⑤ 총 급여는 2023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세전기준의 총 급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⑥ 총 근무시간은 직원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근무시간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제시된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작성사례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37,239,200 원	3,532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10,543 원/시간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 측정대상 시점(2023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2023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자의 총 급여지급 자료
    - \* 측정대상 시점(2023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근무시간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 \* 측정대상 시점(2023년 12월) 총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작성 가이드

(예시)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계산 산식('23년 실제적용 사례)

전체 근로자 수('23.12.31. 고용보험내역 기준)	5명
근로자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일 8시간 4명(주5일) 일 7시간 1명(주4일)
'23년 12월 근무일 수	(주5일) = 20일 / (주4일) = 16일
(계산식) (8시간 × 4명 × 20일) + (7시간 × 1명 × 16일) = <b>752시간</b>	

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배점 : 5점

지표정의

-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 근로자 지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교육별로 교육 내용 및 수혜자수, 교육 시간을 작성하고 1인당 교육훈련 시간 및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 =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정 의무 교육 외		지표 10번 '고용성과' 실적으로 기재 (23년 유급 근로자 수)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① 아래의 법정의무교육은 기업 의무사항이므로 제외되며, 직무·사업영역과 관련성이 적은 교육의 기재는 지양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

② 교육과정: 외부전문 강사초빙 및 출장교육 외에도 내부교육도 인정가능(증빙필요)합니다.  
\* 내부: 경력자(선임자 등)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외부: 전문가 초빙·수강을 통한 교육

③ 전체 근로자 수 : 교육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수는 2023년 12월 기준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대표자는 제외)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학위과정 및 전문자격 이수 외 일반교육의 최대 인정시간은 50시간 내로 제한됩니다.  
※ 각 교육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시는 필수이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각 조사항목의 확인이 불가할 시 신청서상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작성사례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 =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정 의무 교육 외	내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명	5명	5H	1.25
	외부 회계교육		3명	5H	0.75
	내부교육(노인성 치매관련)		10명	5H	2.5
	외부 간병서비스 교육		15명	5H	3.75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8.25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가. 필수자료

- 2023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의 총 유급근로자 명부)
- 교육시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자격 이수증, 교육 참석사진 등)

나. 선택자료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기업 자체양식 활용가능)
  - \* 자체양식 활용 시, 1)교육수혜자수, 2)교육시간 항목 포함필수(1인당 교육시간 산정)
- 교육 결과보고서([제3장] 양식 참조)
  - \* 내부교육 시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제3장]의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을 참고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10

고용 성과

배점 : 10점

지표정의

- 조직이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의 유급근로자 수 및 직전년도와 비교한 고용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명, %)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2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 ①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a): 2023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23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 ② 2022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b): 2022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2022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 ③ 고용성장률: 2022년 고용인원 수 대비 2023년 고용인원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text{고용 성장률} = \frac{('23.12.)\text{총 유급근로자수}(a) - ('22.12.)\text{총 유급근로자수}(b)}{('22.12.)\text{총 유급근로자수}(b)} \times 100\%$$

- \*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④ 유급근로자수는 각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이며, 고용보험내역에 등재 인원만 인정됩니다.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 ⑤ 측정 대상년도(2023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고용 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 로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단위: 명, %)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2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15 명	12 명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25 %	

※ 고용성장률 산출 =  $\{ (15\text{명} - 12\text{명}) \div 12\text{명} \} \times 100 (\%) = 25 \%$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2년, 2023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11

## 매출성과

배점 : 10점

## 지표정의

○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조직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회계 상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매출액성장률을 기준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의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단위: 원, %)

2023년도 매출액 (a)	2022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① 매출액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천원 이하는 절사)합니다.

\* 증빙서류: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매출액)

② 매출액 성장률: 2022년 매출액 대비 2023년 매출액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text{매출액 성장률} = \frac{2023\text{년 매출액}(a) - 2022\text{년 매출액}(b)}{2022\text{년 매출액}(b)} \times 100\%$$

\* 매출액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③ 측정 대상년도(2023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매출액 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로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단위: 원, %)

2023년도 매출액 (a)	2022년도 매출액 (b)
512,000,123원	400,000,123원
매출액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28.0%	

※ 매출액 성장률 산출

$$= \{ (512,000,123\text{원} - 400,000,123\text{원}) \div 400,000,123\text{원} \} \times 100 (\%) = 28 \%$$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2년, 2023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12

## 영업성과

배점 : 5점

##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지표인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 작성방법

- 측정 대상연도(2023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원)

구 분	내 용
영업이익	원

- ①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
- ②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하여 기재  
\* 예시) 영업손실이 총 500,000원 발생한 경우, '- 500,000' 으로 기재
-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3년 기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지표 13

## 노동생산성

배점 : 5점

## 지표정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노동생산성을 측정

## 작성방법

- 측정 대상연도(2023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 및 노동생산성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단위: 원, 시간, %)

2023년 매출액(a)	2023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원	시간
노동생산성 (a÷b)	
%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2023년 매출액}(a)}{\text{2023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 ① 매출액: 2023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재
- ②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2023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 확인
  -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2023년 기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주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서류 (근로계약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지표 14

혁신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혁신노력 및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 ①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 ②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5점)	<p>※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자유롭게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b>【 작성예시 】</b></p> <p>① <b>(제도개선 노력)</b>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등 기업 운영 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p> <p>② <b>(전문인력 도입)</b>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 * 기술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자 등 전문인력 자격 사항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p> <p>③ <b>(사내제안 및 외부의견)</b> Bottom-up 방식의 사내 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 의견 수용 내용 등</p> <p>④ <b>(경영시스템 개선)</b>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p> <p>⑤ <b>(기술 개발)</b>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등 설치, 신제품 출시 등</p> <p>⑥ <b>(R&amp;D 투자)</b>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등</p> <p>⑦ <b>(환경보호)</b> 친환경 제품 생산, 재생 원료 사용,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p> <p>⑨ <b>(기타)</b>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 노력 기재</p>



구분	착안사항
혁신의 결과 (5점)	<p>※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b>【 기업 작성예시 】</b></p> <p>① <b>(재무 성과)</b>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비용 감소 등</p> <p>② <b>(고객 만족)</b> 이용자 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재구매율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등</p> <p>③ <b>(기술적 성과)</b>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투자 유치 또는 지원사업 선정,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원·등록, ISO 등 국제 인증 여부 등 *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2년 이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인정</p> <p>④ <b>(환경적 성과)</b> 녹색기업 지정, 녹색제품 인증,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등</p> <p>⑤ <b>(기타)</b>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p>
<p>※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p>	

###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작성서식 및 참고예시] 작성사례 예시 참조(p.63)

## 부록. 측정 기준표







### [참고자료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지표 3)

(단위: %, 원)

	업종 분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 값	취약계층 평균시급 중위 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66.7%	11,354
2	제조업(C)	64.3%	11,521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72.6%	12,673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50.0%	24,770
5	건설업(F)	60.0%	12,673
6	도매 및 소매업(G)	57.1%	12,204
7	운수업(H)	60.8%	12,845
8	숙박 및 음식점업(I)	66.7%	11,905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50.0%	12,097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L)	37.5%	14,401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50.0%	12,673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7.5%	12,223
13	교육 서비스업(P)	50.0%	12,097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73.8%	12,358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50.0%	12,064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5.2%	11,642
<b>전체 사회적기업**</b>		<b>63.6%</b>	<b>12,083</b>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평균값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2개 분야)  
- (부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자료 3]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지표 6)**

(단위: 원)

	업종 분류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재투자 평균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8,694,558
2	제조업(C)	10,610,076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4,780,611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0,026,121
5	건설업(F)	25,475,976
6	도매 및 소매업(G)	24,416,877
7	운수업(H)	13,671,486
8	숙박 및 음식점업(I)	6,071,212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8,493,265
10	금융 및 보험업(K)	0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59,242,077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832,513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9,057,646
14	교육 서비스업(P)	13,045,345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9,852,544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6,835,124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7,796,902
<b>전체 사회적기업</b>		<b>16,023,644</b>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평균값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2개 분야)  
- (부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4] 근로자 시급수준(지표 8)

(단위: 원)

주업종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농업, 임업 및 어업(A)	11,037 미만	11,037 이상 11,354 미만	11,354 이상 11,982 미만	11,982 이상 13,825 미만	13,825 이상
제조업(C)	11,035 미만	11,035 이상 11,603 미만	11,603 이상 13,244 미만	13,244 이상 17,281 미만	17,281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11,521 미만	11,521 이상 12,673 미만	12,673 이상 13,862 미만	13,862 이상 17,212 미만	17,212 이상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5,086 미만	15,086 이상 23,836 미만	23,836 이상 28,802 미만	28,802 이상 38,450 미만	38,450 이상
건설업(F)	11,521 미만	11,521 이상 12,673 미만	12,673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17,281 미만	17,281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11,521 미만	11,521 이상 12,385 미만	12,385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17,663 미만	17,663 이상
운수업(H)	11,715 미만	11,715 이상 14,000 미만	14,000 이상 16,129 미만	16,129 이상 19,998 미만	19,998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11,137 미만	11,137 이상 12,041 미만	12,041 이상 13,039 미만	13,039 이상 15,268 미만	15,268 이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521 미만	11,521 이상 12,760 미만	12,760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17,864 미만	17,864 이상
금융 및 보험업(K)	12,961 미만	12,961 이상 16,129 미만	16,129 이상 17,281 미만	17,281 이상 18,836 미만	18,836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2,212 미만	12,212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16,129 미만	16,129 이상 23,135 미만	23,135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1,854 미만	11,854 이상 13,441 미만	13,441 이상 15,553 미만	15,553 이상 20,161 미만	20,161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1,070 미만	11,070 이상 12,001 미만	12,001 이상 13,327 미만	13,327 이상 17,019 미만	17,019 이상
교육 서비스업(P)	11,521 미만	11,521 이상 12,097 미만	12,097 이상 13,379 미만	13,379 이상 15,841 미만	15,841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1,364 미만	11,364 이상 12,035 미만	12,035 이상 12,953 미만	12,953 이상 15,110 미만	15,110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1,090 미만	11,090 이상 11,636 미만	11,636 이상 13,167 미만	13,167 이상 15,511 미만	15,511 이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1,060 미만	11,060 이상 11,521 미만	11,521 이상 12,555 미만	12,555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전체 사회적기업	11,140 미만	11,140 이상 12,046 미만	12,046 이상 13,442 미만	13,442 이상 17,038 미만	17,038 이상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평균값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5] 고용성과(지표10)

(단위: 명)

주업종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농업, 임업 및 어업(A)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8 미만	8 이상
제조업(C)	4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12 미만	12 이상 23 미만	23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12 미만	12 이상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2 미만	12 이상 31 미만	31 이상 39 미만	39 이상 48 미만	48 이상
건설업(F)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1 미만	11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5 미만	15 이상
운수업(H)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13 미만	13 이상 23 미만	23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6 미만	6 이상 13 미만	13 이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6 미만	6 이상 12 미만	12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L)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1 미만	11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 미만	3 이상 7 미만	7 이상 10 미만	10 이상 17 미만	17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8 미만	18 이상 48 미만	48 이상
교육 서비스업(P)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9 미만	9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6 미만	6 이상 18 미만	18 이상 42 미만	42 이상 98 미만	98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9 미만	9 이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4 미만	14 이상
전체 사회적기업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9 미만	9 이상 21 미만	21 이상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6] 매출성과(지표 11)

(단위: 원)

주업종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농업, 임업 및 어업(A)	121,915,578 미만	121,915,578 이상 280,489,132 미만	280,489,132 이상 510,154,962 미만	510,154,962 이상 1,121,023,926 미만	1,121,023,926 이상
제조업(C)	285,341,401 미만	285,341,401 이상 700,971,392 미만	700,971,392 이상 1,504,834,812 미만	1,504,834,812 이상 3,415,996,641 미만	3,415,996,641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194,867,413 미만	194,867,413 이상 448,363,835 미만	448,363,835 이상 1,321,731,974 미만	1,321,731,974 이상 2,445,026,606 미만	2,445,026,606 이상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318,671,872 미만	1,318,671,872 이상 2,951,811,337 미만	2,951,811,337 이상 4,022,978,626 미만	4,022,978,626 이상 4,939,337,684 미만	4,939,337,684 이상
건설업(F)	423,307,790 미만	423,307,790 이상 703,304,703 미만	703,304,703 이상 1,067,953,875 미만	1,067,953,875 이상 1,734,697,039 미만	1,734,697,039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277,934,294 미만	277,934,294 이상 586,138,011 미만	586,138,011 이상 1,091,451,113 미만	1,091,451,113 이상 2,699,887,953 미만	2,699,887,953 이상
운수업(H)	351,454,659 미만	351,454,659 이상 776,059,408 미만	776,059,408 이상 1,015,713,377 미만	1,015,713,377 이상 2,547,787,812 미만	2,547,787,812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128,437,899 미만	128,437,899 이상 239,128,578 미만	239,128,578 이상 350,410,911 미만	350,410,911 이상 920,215,651 미만	920,215,651 이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221,140,450 미만	221,140,450 이상 352,695,183 미만	352,695,183 이상 638,113,819 미만	638,113,819 이상 1,253,882,375 미만	1,253,882,375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L)	232,307,446 미만	232,307,446 이상 251,020,514 미만	251,020,514 이상 908,414,393 미만	908,414,393 이상 1,183,010,195 미만	1,183,010,195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19,623,963 미만	319,623,963 이상 517,486,009 미만	517,486,009 이상 902,097,928 미만	902,097,928 이상 1,749,570,445 미만	1,749,570,445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327,081,710 미만	327,081,710 이상 579,442,086 미만	579,442,086 이상 947,635,790 미만	947,635,790 이상 1,897,475,858 미만	1,897,475,858 이상
교육 서비스업(P)	124,884,673 미만	124,884,673 이상 199,764,506 미만	199,764,506 이상 344,728,223 미만	344,728,223 이상 730,696,941 미만	730,696,941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279,473,321 미만	279,473,321 이상 672,035,485 미만	672,035,485 이상 1,230,437,505 미만	1,230,437,505 이상 2,826,652,855 미만	2,826,652,855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98,023,508 미만	98,023,508 이상 204,674,843 미만	204,674,843 이상 401,545,269 미만	401,545,269 이상 771,357,796 미만	771,357,796 이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19,760,590 미만	119,760,590 이상 261,104,266 미만	261,104,266 이상 463,537,747 미만	463,537,747 이상 864,341,648 미만	864,341,648 이상
전체 사회적기업	200,704,110 미만	200,704,110 이상 438,810,845 미만	438,810,845 이상 885,831,956 미만	885,831,956 이상 2,043,042,292 미만	2,043,042,292 이상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7] 매출액 성장률(지표 11)

(단위: %)

	업종분류	매출액성장률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0.1%
2	제조업(C)	3.9%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0.0%
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6%
5	건설업(F)	0.0%
6	도매 및 소매업(G)	0.0%
7	운수업(H)	7.8%
8	숙박 및 음식점업(I)	9.5%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0.0%
10	금융 및 보험업(K)	20.2%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L)	0.0%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3%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8.0%
14	교육 서비스업(P)	2.8%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6%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7.7%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4.6%
<b>전체 사회적기업</b>		<b>8.9%</b>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4개 분야)
- 광업(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8] 영업성과(지표 12)

(단위: 원)

주업종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농업, 임업 및 어업(A)	-50,608,569 미만	-50,608,569 이상 -3,693,598 미만	-3,693,598 이상 9,087,491 미만	9,087,491 이상 43,408,363 미만	43,408,363 이상
제조업(C)	-91,496,028 미만	-91,496,028 이상 -9,846,570 미만	-9,846,570 이상 22,177,685 미만	22,177,685 이상 114,747,396 미만	114,747,396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3,679,467 미만	3,679,467 이상 44,908,731 미만	44,908,731 이상 62,946,411 미만	62,946,411 이상 153,413,183 미만	153,413,183 이상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24,059,066 미만	-24,059,066 이상 61,645,904 미만	61,645,904 이상 140,217,730 미만	140,217,730 이상 239,661,693 미만	239,661,693 이상
건설업(F)	-43,884,873 미만	-43,884,873 이상 1,464,738 미만	1,464,738 이상 21,605,594 미만	21,605,594 이상 73,608,049 미만	73,608,049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71,472,358 미만	-71,472,358 이상 -18,340,903 미만	-18,340,903 이상 6,888,469 미만	6,888,469 이상 46,873,695 미만	46,873,695 이상
운수업(H)	-37,285,354 미만	-37,285,354 이상 -4,546,156 미만	-4,546,156 이상 14,601,204 미만	14,601,204 이상 58,030,084 미만	58,030,084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66,262,858 미만	-66,262,858 이상 -30,328,610 미만	-30,328,610 이상 -9,254,734 미만	-9,254,734 이상 12,131,533 미만	12,131,533 이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72,438,570 미만	-72,438,570 이상 -6,495,505 미만	-6,495,505 이상 14,187,995 미만	14,187,995 이상 47,196,650 미만	47,196,650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21,431,212 미만	-121,431,212 이상 -4,047,651 미만	-4,047,651 이상 18,124,517 미만	18,124,517 이상 34,537,911 미만	34,537,911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64,845,775 미만	-64,845,775 이상 -566,452 미만	-566,452 이상 20,233,053 미만	20,233,053 이상 83,633,090 미만	83,633,090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40,208,955 미만	-40,208,955 이상 -5,567,496 미만	-5,567,496 이상 19,818,248 미만	19,818,248 이상 58,288,332 미만	58,288,332 이상
교육 서비스업(P)	-75,928,525 미만	-75,928,525 이상 -33,939,793 미만	-33,939,793 이상 -3,306,742 미만	-3,306,742 이상 19,839,076 미만	19,839,076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67,244,376 미만	-67,244,376 이상 -22,700,010 미만	-22,700,010 이상 0 미만	0 이상 47,334,937 미만	47,334,937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91,288,191 미만	-91,288,191 이상 -36,645,677 미만	-36,645,677 이상 -8,427,491 미만	-8,427,491 이상 15,298,199 미만	15,298,199 이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75,261,819 미만	-75,261,819 이상 -12,003,234 미만	-12,003,234 이상 7,420,859 미만	7,420,859 이상 38,235,019 미만	38,235,019 이상
전체 사회적기업	-72,443,665 미만	-72,443,665 이상 -16,641,555 미만	-16,641,555 이상 9,389,116 미만	9,389,116 이상 58,485,821 미만	58,485,821 이상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참고자료 9] 노동생산성-시간당 매출액(지표 13)

(단위: 원)

주업종	0%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농업, 임업 및 어업(A)	253,687 미만	253,687 이상 454,581 미만	454,581 이상 805,712 미만	805,712 이상 1,534,156 미만	1,534,156 이상
제조업(C)	345,591 미만	345,591 이상 588,072 미만	588,072 이상 916,569 미만	916,569 이상 1,506,623 미만	1,506,623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475,980 미만	475,980 이상 1,136,922 미만	1,136,922 이상 2,134,413 미만	2,134,413 이상 2,287,663 미만	2,287,663 이상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444,900 미만	444,900 이상 553,168 미만	553,168 이상 635,508 미만	635,508 이상 705,312 미만	705,312 이상
건설업(F)	527,915 미만	527,915 이상 789,022 미만	789,022 이상 1,112,575 미만	1,112,575 이상 1,499,192 미만	1,499,192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403,843 미만	403,843 이상 725,080 미만	725,080 이상 1,086,083 미만	1,086,083 이상 1,765,185 미만	1,765,185 이상
운수업(H)	270,269 미만	270,269 이상 528,179 미만	528,179 이상 701,017 미만	701,017 이상 1,001,204 미만	1,001,204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191,983 미만	191,983 이상 326,637 미만	326,637 이상 435,485 미만	435,485 이상 618,182 미만	618,182 이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300,122 미만	300,122 이상 493,247 미만	493,247 이상 689,202 미만	689,202 이상 1,078,466 미만	1,078,466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L)	310,161 미만	310,161 이상 659,103 미만	659,103 이상 807,062 미만	807,062 이상 1,511,405 미만	1,511,405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47,340 미만	347,340 이상 507,774 미만	507,774 이상 712,761 미만	712,761 이상 987,682 미만	987,682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215,198 미만	215,198 이상 284,061 미만	284,061 이상 383,229 미만	383,229 이상 561,958 미만	561,958 이상
교육 서비스업(P)	226,827 미만	226,827 이상 343,525 미만	343,525 이상 477,763 미만	477,763 이상 838,353 미만	838,353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2,389 미만	182,389 이상 213,057 미만	213,057 이상 264,187 미만	264,187 이상 408,443 미만	408,443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2,212 미만	192,212 이상 353,462 미만	353,462 이상 517,829 미만	517,829 이상 858,904 미만	858,904 이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61,330 미만	161,330 이상 289,502 미만	289,502 이상 379,387 미만	379,387 이상 553,080 미만	553,080 이상
전체 사회적기업	243,378 미만	243,378 이상 418,957 미만	418,957 이상 659,231 미만	659,231 이상 1,180,638 미만	1,180,638 이상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평균 수치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